지속가능발전위원회 보도자료	년 월 일 (조, 석간)부터 보도해 주십시오

□ 2004. 2. 12 배포
□ 사진 없음
□ 총 6 쪽

기획운영실 갈등해결 정책팀	서철모 팀장	전 화 (FAX)	385 - 7600 388 - 7986

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제38회 국정과제회의에서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방안 보고

- 갈등관리기본법 제정, 갈등관리지원센타 설립 추진
- 한탄강댐 갈등관리 준비단 구성

□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(위원장 고철환 서울대 해양학과 교수)는 2004년 2월 12일에 청와대에서 제38회 국정과제회의를 열어 **“갈등관리 시스템 구축방안”**을 대통령께 보고

< 주요 보고내용>

□ 참여정부의 갈등관리정책의 기본방향

- 정부, 시장, 시민사회의 균형발전을 통한 신뢰구축
- 합의와 설득 절차를 통한 타협과 협력 문화의 형성
- 공정성, 전문성의 확보를 통한 사회적 권위 확립

□ 갈등예방, 갈등관리,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기본틀을 개발하여 정부, 기업, 시민사회 등 사회의 전분야에서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문화를 키워 나가기로 함

- 갈등을 예방하거나 관리하기 위하여 공무원 등이 갈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**「갈등예방 및 관리 매뉴얼」**을 개발

□ **갈등관리기본법 제정 추진**

- 분산된 갈등관리제도의 체계화, 효율적인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함
- 기본방향은 국가와 지자체의 갈등예방, 대안적 갈등관리방안(ADR) 개발 및 보급, 당사자 해결원칙 등

※ 대안적 갈등관리방안은 참여형 정책결정을 통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한 갈등은 협상, 조정·중재 등 다양한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갈등을 관리하는 방안

- 주요내용은 갈등관리의 기본원칙,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, 갈등해결 지원기구 등
- '갈등관리기본법 제정추진단'을 구성하여 법안을 마련하고 부처협의를 거쳐 2004년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

□ **갈등관리지원센타 설립**

○ 주요기능은 갈등관리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, 갈등관리 관련 연구 및 지원, 갈등해결 정보 DB 구축과 정보공유 등

- 갈등은 민간부문에서 자율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, 갈등관리지원센타는 교육·연구기관, 민간 중재기관을 활성화하는 지원기관으로 활동할 계획
- 2004년에 '갈등관리지원센타 설립추진단'을 구성하여 운영한 후, 2005년부터 '갈등관리지원센타'를 설립하여 본격 운영

□ '한탄강댐 갈등관리 준비단' 구성

○ '한탄강댐 갈등관리 준비단(단장 정진승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,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)을 구성하여 한탄강댐 갈등을 풀어갈 계획

- 합리적인 갈등관리 프로세스를 디자인한 후, 4월에 갈등관리 전문가로 '한탄강댐 갈등조정위원회'를 구성하여 5월부터 본격 활동

붙임 : 「갈등관리시스템」구축방안 주요 보고내용

<붙임>

「갈등관리시스템」구축방안 주요 보고내용

1. 정책제안 배경

-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이행됨에 따라 갈등양상이 ‘억압형 → 잠재형 → 표출형 → 확산형’으로 변화
-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갈등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전환할 필요성 증대
- 2003년 10월 2일부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갈등관리정책 연구팀을 구성하여 집중연구
- 2004년 2. 12 제38회 국정과제회의에서 대통령께 보고

2. 갈등관리정책 목표

- 갈등관리를 통한 사회통합
- 갈등관리프로세스 개발을 통한 체계적 갈등관리
- 갈등관리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
- 법·제도 정비를 통한 효율적 갈등관리시스템의 정착

3. 갈등관리정책 기본방향

- 정부, 시장, 시민사회의 균형발전을 통한 신뢰구축
- 합의와 설득절차를 통한 타협과 협력 문화 형성
- 공정성, 전문성 확보를 통한 사회적 권위 확립

4. 갈등관리 프로그램 개발

1)갈등예방 프로그램

- 참여적 정책결정을 통한 갈등예방
- 합의회의, 시민배심원, 시나리오 웍샵, 규제협상, 공론조사 등 기법이용

2) 갈등관리 프로그램

- 이미 발생한 갈등을 당사자 협상, 제3자 조정·중재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관리
- 협상 프로세스와 조정 프로세스의 개발

3) 갈등관리 프로그램의 적용: 한탄강댐 사례

- 갈등관리 프로그램을 한탄강에 적용하여 합리적 절차와 합의에 의한 모범사례 창출
- ‘ 한탄강댐 갈등관리 준비단 ’ 구성·운영

4) 교육훈련 프로그램

- 초, 중, 고생, 대학생, 시민단체
- 공무원, 전문가 그룹
- 갈등관리 전문가 양성
- 전문연구기관 설립 및 지원

5. 법·제도 정비

1)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등

□ 필요성

- 기존의 분산된 갈등관리 제도의 체계화
- 효율적인 갈등관리 시스템을 구축
-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도모

□ 기본방향
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갈등의 사전예방
- 대안적 갈등관리 방안의 개발과 보급
- 갈등이해관계자의 당사자 해결원칙 적용
- 합의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 준수
- 갈등관리 연구 및 전문가 양성을 통한 인프라 구축

□ 갈등관리기본법(안)의 주요내용

	주 요 내 용
총 칙	- 목적, 용어의 정의, 적용범위, 갈등관리의 기본 원칙
국가와 지자체의 책무	- 정책결정과정에 참여 기회 및 의견수렴의 확대 - 분쟁 조정과 피해구제 - 갈등관련 교육, 조사 및 연구에 대한 지원
갈등관리 지원기구	- 갈등관리지원센터 설치 - 갈등관리지원센터의 업무
전문조정중재인	- 중재자의 자격, 양성 및 활용 - (가칭) 한국조정중재협회의 설치

※ 추진계획 : 『갈등관리기본법』 제정 추진단 구성·운영

□ 외국의 갈등관리 관련법과 제도현황

<미 국>

- 행정분쟁해결법(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0), 협상에 의한 법규 제정법(1990년)

<유 럽>

- 독일의 경우, 국토 도시계획 및 기타 공공사업계획법제에서계획형량(衡量)제도를 통한 갈등해결원칙 의무화

<일본>

- 일반적 갈등관리방안으로 ADR(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) 기본법(안) 입법화 추진중

6. 갈등관리 지원센타 설립

□ 필요성

-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회갈등 예방 및 관리 관련 정책 수립 및 관리
- 사회갈등에 대한 조정 및 관리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
- 갈등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 연구 활성화

□ 주요기능

- 갈등관리 법·제도 개선방안 연구
- 갈등관리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
- 갈등관리 정보 및 전문가 DB 구축 및 통합관리
- 갈등관리 연구 지원